

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Q&A

Q1. 금번 대책 마련 배경은?

-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
- 그간 규제개혁 대책 발표시점부터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* 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타이밍을 놓치거나,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한계점 지적되어 왔음

* 법률개정 과제 405일, 시행령 이하는 평균 97일 개정일 소요('16.3, 한경연)

- 이에 현장의 규제건의를 수렴하면서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2개월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·발표
- 또한 항구개선을 원칙으로 개선하되,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·완화가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집행 중단(완화)시키는 한시유예 개선도 포함

Q2. 한시적 규제유예로 인한 법적 안정성,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?

- (형평성 측면) 경제가 어려울때 창업·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규제완화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임
- (법적안정성 측면) 또한 유예기간이 종료하면 규제집행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법령에 반영할 것이므로,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임

Q3. 향후 법령개정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?

- 시행령 이하 과제(전체 95%)는 2개월내에 정비 완료를 목표로 개정
 - 시행령 단위는 국무조정실에서 일괄개정 지원
 - 시행규칙 이하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개정
- ※ 법 단위(16개, 5%)는 9월 국회 개의 후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

Q4. 2009년도 한시유예 대책과의 차이점은?

- '09년에는 한시유예를 처음 도입하여 제도적 실험을 했던 시기로 한시과제에 집중하여 발굴하였으나,
 - 이번에는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 항구개선을 원칙으로 하면서, 당장 개선이 어려운 규제에 투자대기 수요 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
- * ('09년) 280건 중 한시 145건(51%), 항구 135건(49%)
(*16년) 303건 중 한시 54건(18%), 항구 249건(82%)